

國際法上 東北亞海域環境保護에 관한 研究

李 潤 哲*

A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Northeast Asian Seas in International Law

*Yun-Cheol Lee**

< 목 차 >

Abstract

I 序 論

II.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法的 發展

1. 傳統國際慣習法 및 國際條約法
2. 海洋汚染에 관한 國際法の 發展

III.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立法現況

1. 概 觀
2. 韓 國
3. 中 國
4. 日 本
5. 北 韓

6. 評 價

IV.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家의 義務와 責任

1. 國家의 環境損害防止義務
2. 環境保護義務에 대한 主要內容
3.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家責任

V.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地域的 協力

1.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際的 協力
2. 地域的 協力の 當爲性 및 提言

VI. 結 論

참고문헌

Abstract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a great quantity of chemical materials were used and in consequence, mass transportation of oil and other dangerous materials was required on the one hand, and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s drew also th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oil tankers accidents, mass use of nuclear materials,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further deep

* 정회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동대학 강사.

human concern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cern to new and more dangerous sources of marine pollution regarded more strict and legal control on the Oil Tanker(DWT 95,000tons, Cb=0.805) model.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specially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s surrounded by Japan, the Russian Far East,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aiwan. These adjacent countries must intensify cooper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the contamination of the sea. And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aimed at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or abat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purpose, States concerned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ty to inform, duty to consult and duty to assist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various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ctual or potential transboundary pollution with the use of a natural resource 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some form of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may become useful or indispensable. The functions of this Organization are, inter alia, to keep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regional or sub-regional rules and standards to be elaborated and on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notified of any grave and imminent danger from pollution or threat of pollu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promote in close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governmental bodies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as, and so on.

Above mentioned countries, first of all, are locat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Seas geographically and, therefore, take responsibilities of preserving the clean sea against marine interferences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of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y must be followed under the UNCLOS and other marine convention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Northeast Asian Seas will become dead seas in case that there is no instant and prompt action against pollution. Hence w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ndato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n turn can facilit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y the neighbouring states within this area.

I. 序 論

海洋은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로이자 인간의 여가선용을 위한 관광지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더우기 海洋은 각종 天然資源이 풍부하게 賦存되어 있으며, 인간의 각종 경제활동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이와같이 海洋은 인류를 위하여 막대한 開發價値와 開發可能性을 가진 인류의 귀중한 開拓對象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海洋을 오랫동안 각종 汚物處理

場으로 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유해한 각종 産業廢棄物 및 生活廢水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그 일부가 海洋으로 流入 또는 投機되고 있으며 농약잔유물, 방사성동위원소 등도 지표수, 지하수와 함께 海洋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대형유조선 航行의 증가, 각종 선박의 海難事故, 해저활동에서 유출되는 유류에 의한 海洋汚染 등으로 海水 및 海洋生態環境이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일단 오염된 海洋은 自體淨化能力(capacity

for self-purification)이나 汚染物質을 無害하게 할 海洋의 能力, 그리고 海洋의 資源再生能力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은 國경을 초월하여 國際的 次元에서 행할 때 만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위한 海洋污染規制는 世界的 規模로 행해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海洋污染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海洋污染의 樣態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른 海洋污染의 規制方法과 그 전략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海洋污染의 防止를 위한 方法論的 側面에서 본다면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노력은 地域的 次元에서 실행할 때 더욱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東北亞海域과 같이 半閉鎖海인 경우 일단 污染이 되면 회복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조치는 그 沿岸國家의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따라서 沿岸國間的 積極적인 地域的 協力이 요구된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東北亞地域은 東支那海(The East China Sea), 黃海(The Yellow Sea) 및 東海(The East Sea)를 중심으로 인접국가들, 즉 中國, 日本, 臺灣 및 韓國, 러시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東支那海는 태평양의 일부해역으로 북쪽은 한반도, 남쪽은 대만, 동쪽은 유구열도 및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본토로 둘러싸인 半閉鎖海이며, 전체면적이 약 752,000평방 킬로미터, 평균수심이 1,145피트, 폭이 150-360마일이나 되는 共有大陸棚으로 형성되어 있는 淺海의 바다이다. 그런데 東支那海의 大陸棚은 북쪽으로는 발해만, 황해로부터 남쪽으로는 南支那海와 통킹만까지 이어진 세

계적으로 넓은 大陸棚에 속한다. 이 중 양자강부근이 약 450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대만 부근이 125킬로미터 정도로 가장 좁다. 그리고 중국의 양자강 입구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하여 그 북쪽이 黃海海域이다. 黃海 역시 수심이 최고290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 淺海의 共有大陸棚으로 주변국가들의 管轄權內에서 발생한 오염은 인접국가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오염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이다.¹⁾ 東海는 수심이 깊어 한동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덜하였으나 海水의 循環體系가 좋지 못하고 더우기 최근에는 러시아의 核廢棄物 無斷投機로 이제는 오염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해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부존가능성과 해상수송상의 유리한 지리학적인 위치때문에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오염을 가속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한 海洋污染을 규제하기 위한 協力體系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半閉鎖海로 구성된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이 國際法的 次元에서 보호될 수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國際法上的 法理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정리함으로써 東北亞海域의 環境保存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法的 發展

1. 傳統國際慣習法 및 國際條約法

국가는 자국의 領海를 타국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되고, 마찬가지로 그 관할하

1) 美國의 環境監視團體인 월드워치(World Watch)는 1995년 1월 5일 발간한 95년도 신년호에서 環境污染이 극심한 '世界 7대 죽어가는 海洋'으로 黑海, 黃海, 南支那海, 地中海, 카스피海, 발틱海, 베링海 등을 꼽고 이 중에서 黃海를 黑海에 이어 두번째로 오염이 극심한 해역으로 꼽았다. 오염의 주요원인은 中國 연안지역의 工業화와 농업경작지의 확대로 化學물질과 비료에서 카드뮴, 수은, 납, 구리 등 중금속과 원유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황하와 양자강을 통해 대량으로 黃海에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黃海부근의 중국인구와 남북한 인구를 합쳐 2억 5천만명에 이르는 인구밀집도 이 해역의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南北韓과 中國이 黃海污染防止를 위한 共同努力을 기울여야 하며 이같은 개선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황해는 머지않아 '죽은 바다'가 되고 연안어업조차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월드워치는 경고했다. 朝鮮日報, 中央日報 1995년 1월 6일자 3면 參照.

에 있는 사인의 활동도 그와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慣習法上的 原則이다. 이 原則은 1938년과 1941년의 양차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간에 설립된 仲裁裁判所에 의한 Trail Smelter Case의 判決에서 유추하여 도출된 原則이다. 이 仲裁判決은 캐나다에 대하여 그 관할권내에 있는 용광로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미국측에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國際責任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大氣汚染에 관한 것이지만 이론구성은 領海의 汚染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즉 국가는 領海의 汚染으로 인한 손해를 타국에게 주지 않도록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며 이에 위반하면 國家의 國際責任이 발생하여 損害賠償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은 主權絕對原則에 대한 반발로부터 생긴 主權制限의 原則(Sic Utere Tuo)이나 權利濫用(abuse of rights)禁止의 原則 등의 일반 원칙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原則은 公海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管轄權以遠의 海域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先進海洋國家들은 公海自由의 原則(freedom of high seas)을 주장하며 이 원칙의 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公海에 관한 一般條約에서는 公海의 自由를 타국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 고려를 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傳統的 自由放任의 개념에 약간의 제한을 해왔으나 海洋汚染問題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海洋環境汚染의 규제에 관한 國際條約法의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先例가 된 것은 國際河川에 관한 條約이다. 國際河川(international waterways)은 그 이용에 관하여 沿岸國의 이해가 얽히었기 때문에 國際河川法은 海洋汚染에 관한 법보다도 일찍 생성하기 시작했고, 그 法理는 海洋汚染의 國際法에 관한 法原則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國際河川法은 당초 항행의 자유를 확보할 뿐이고 하천의 이용에 관하여는 沿岸國에 아무런 의무도 과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천은 沿岸國의 영토를 貫流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沿岸國의 절대적인 領土主權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國際河川의 이용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하천의 이용을 沿岸國의 일방적 의사에만 맡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국제법은 沿岸國의 일방적인 領土主權의 行使를 하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의 측면에서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었다.³⁾

2. 海洋汚染에 관한 國際法の 發展

海洋汚染의 규제에 관한 법의 생성과정에서는 해양의 自淨能力이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오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海洋汚染에 관한 국제법은 國內法理論이나 國際河川法理論의 類推適用 및 國際法一般理論의 구체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손해의 정도도 국지적이었고 오염규제도 수개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되었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海洋汚染의 양상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지구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법은 海洋環境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海洋汚染의 규제에 관한 상설적인 國際機構가 생겨 이 기구의 주도하에 다수국간의 條約이나 協約 등이 많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旗國主義로부터 沿岸國主義 또는 寄港國主義로의 管轄權의 移行, 海洋汚染에 대한 國際義務 및 義務違反에 따르는 國際責任의 法理 등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새로운 法理가 정비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海洋環境汚染의 규제 내지 海洋環境保存에 관한 國際條約은 Torrey Canyon호 사건을 계기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國際條約의 성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國際機構는 1972년의 國際人間環境會議, 1973년 이후의 第3次유엔海洋法會議, 1973년의 IMCO海洋汚染會議 및 1992년의 유엔環

2) 李相敦, '國際公害에 관한 國際法上 國家責任', 法學論文集 第8輯, 中央大學校, 1983.

3) 全昌祚, 地球環境의 危機, (釜山: 世宗出版社, 1992), pp. 261-264.

境開發會議 등이다. 이 밖에도 地域的인 條約도 다수 체결되어 規制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 1972年 Stockholm 人間環境宣言

유엔총회는 1968년 유엔人間環境會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 決議에 따라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人間環境宣言과 人間環境行動計劃을 채택하였으며 유엔環境計劃(UNEP)이라는 國際環境機構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人間環境宣言은 스톡홀름宣言이라고도 하는데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선언에 불과하지만 國際環境法の 基本原理과 原則을 천명함으로써 國際環境法の 성립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國際文書라고 할 수 있다. 위 宣言에 따르면 현재와 將來世대를 위한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인류의 지상목표이며(전문 제6조), 인간은 현재 및 將來의 世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責任을 지고 있고(원칙 제1조), 각국은 유엔憲章과 國際法原則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主權的 權利(sovereign right)를 가지며, 또한 개발활동이 타국이나 域外地域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할 責任이 있음(원칙 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⁴⁾ 그리고 각국은 인간의 환경이나 생물자원과 유해한 물질로 인한 물질로 인한 海洋의 汚染을 방지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야생동물과 천연자원 등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원칙 제2, 4, 5, 6, 7조). 한편 環境問題의 등장인 開發途上國의 빈곤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의 회석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즉, 同宣言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環境政策은 개발도상국의 현재 및 미래의 開發可能性

이나 양호한 生活條件의 達成을 저해해서는 아니되며, 環境基準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달리 적용할 수 있음(원칙 제11, 23조).

특히 많은 UN專門機關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Stockholm 人間環境會議에서 채택된 Stockholm人間環境宣言을 통하여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國際法上的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Stockholm宣言은 環境의 질적 향상 및 環境保護와 관련된 국제적 문제는 모든 國家의 協力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環境汚染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多者間 또는 兩者間 國家協定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地理的, 生態的 要因이 동일한 自然的 實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汚染防止를 위해서는 지역국가간 정책적 조화를 피하여야 하고, 共同的 汚染防止措置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 제24조).

(2) MARPOL 73/78⁵⁾

1967년의 油槽船 Torry Canyon호의 坐礁事故로 船舶의 海難事故로 인한 油類의 海洋汚染問題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한 海上物動量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의 1954년의 協約으로는 尙해내기 어려움에 따라 1969년의 IMCO總會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協約을 締結하기 위한 國際會議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決議에 따라 1973년 10월 London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에서 MARPOL(1973)이 채택되게 되었다.⁶⁾

1973년 政府間國際海事機構(IMCO)가 채택한 ‘船舶으로부터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國際協約’(이하 MARPOL로 약칭함)은 이전의 OILPOL(1954)⁷⁾과는 달리 油類汚染뿐만 아니라 船舶에서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汚染을 規制대상으로 하고 있다.

4) Alexandre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London : Graham & Trotman Limited, 1991), p. 40.

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1978(Protocol); 1973의 海洋汚染防止 協約과 同協約에 관한 1978년의 議定書를 말한다.

6) 閔星奎·林東喆, 海事法規要論(釜山 : 韓國海洋大學校海事圖書出版部, 1992), pp. 300~303.

D.P. O'conne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London : Clarendon Press, 1984), p. 1003.

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즉, MARPOL 73/78 附屬書(Annex)는 油類뿐만 아니라 기타 海洋環境에 유해한 汚染物質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規制基準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海洋汚染防止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MARPOL 73/78은 特別水域⁸⁾(Special Areas)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船舶 특히 油槽船(tanker)의 왕래가 빈번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海域을 沿岸國이 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그 海域에 대해서는 MARPOL의 일반적 기준보다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沿岸國은 EEZ(Exclusive Economic Zone)의 범위내에서 特別海域을 지정하여 선박으로 인한 海洋汚染의 防止를 위해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따라서, 東北亞海域의 경우에 향후 예견되는 이 海域에서의 海上物動量增加, 그에 따른 船舶起因 海洋汚染의 發生可能性, 그리고 육지로 둘러싸인 이 海域의 半閉鎖性으로 인한 汚染脆弱性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海域을 MARPOL의 규정에 따라 特別海域으로 설정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中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하였고, 더우기 이 해역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제협력체제가 본격화 됨에 따라 장차 이 海域에서의 特別海域設定이 그다지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沿岸國家들은 아직 이 海域에서 200海里 排他的經濟水域의 설정에 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더우기 特別海域⁹⁾의 설정은 MARPOL協約의 개정절차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關係沿岸國의 合意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特別海域의 지정이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MARPOL 73/78에 의한 特別海域을 지정하는 방법과 함께 沿岸國들의 地域的 協力에 의한 東北亞海域의 汚染防止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1982年 UN海洋法協約

地球環境의 점진적 악화에 대해 인류의 경각심

을 깨우쳐준 1972年 Stockholm人間環境會議 이후, 지구의 가장 통일된 生態界이며 人間環境의 주요 터전인 海洋의 環境保護를 위해 UN海洋法協約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UN海洋法協約은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법적제도를 정착시켰으나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海洋管轄區域의 管轄權범위 및 내용에 관한 전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먼저 協約內容을 확정시킨 것은 이 분야의 중요성을 입증한 셈이다. 어쨌든 UN海洋法協約은 구체적으로 汚染防止規則을 규정하지는 못했으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법적 제도의 중심적 통제원칙으로서 국가의 權限에서 義務에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한편, 國際法上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논리의 기초는 海洋環境이 통일된 生態界를 유지하고 있으며, 人類環境의 주요 터전인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海洋環境을 保護하고 保存하는 것은 모든 國家의 義務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義務의 違反은 國際法上的 義務의 違反인 것이다.

그러나 海洋汚染防止問題의 해결을 위한 法的制度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規範을 제시하는 國際法이나 1982年 UN海洋法協約上的 海洋環境關聯規程이 海洋環境의 保存과 保護에 대한 국가의 義務에 진정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규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海洋汚染規制의 具體的 規程 및 基準設定의 困難性, 管轄權의 歸屬問題, 義務違反에 대한 효과적인 執行의 困難性 등에 의해 야기된다. 따라서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協定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地域協定은 국가가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海洋汚染防止를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

8) MARPOL協約 第211條 參照.

9) 現在 MARPOL상 特別海域으로 지정된 海域은 地中海, 발틱海, 黑海, 紅海, 페르시아灣, 아덴灣 등이다.

10) 1982年 UN海洋法協約 第12章에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에 관해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11) 金榮球, 現代海洋法論(서울: 아세아사, 1988), pp. 545~546.

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 國際法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地域協定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海洋汚染은 地域의 經濟的, 文化的 特性 또는 地域의 物理的 特性에 따라 汚染形態를 달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汚染防止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1982년 UN海洋法協約도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次元에서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 協約의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다.¹²⁾

1982년 UN海洋法協約 제9장은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의 지리적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 지역의 海洋活動에 대해 관계국이 相互協力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제9장 제123조에는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의 沿岸國들이 UN海洋法協約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相互協力할 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沿岸國間에 直接的으로 또는 地域組織을 통하여 地域的인 協력이 요구된다.

- 가) 海洋生物資源의 管理, 保護, 探査 및 利用의 調整
- 나)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에 관한 利用義務履行의 調整
- 다) 科學調查政策의 調整 및 적절한 경우 共同科學調查計劃의 實施
- 라) 위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相互協력을 위한 다른 利害關係國 또는 國際組織의 招請 등이다.

海洋環境을 보호하기 위한 地域的 協력은 同協約 제12장 제197조 내지 제201조에서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國家는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특수한 地域的 特性(characteristic regional features)을 고려한 地域單位(regional basis)의 국가간에 協力하여야 한다"(제197조)고 규정함으로써 海洋環境의 保存을 위해 地域主義(Regionalism)를 수용하고 있다.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위한 이러한 地域主

義의 수용은 그 결과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 목적을 위해서는 國家間 또는 地域國家間 協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이러한 地域的 協力義務는 각 汚染源別 海洋汚染防止義務를 규정한 제207조 내지 제212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地域協력이 요구되는 陸上起因 汚染, 海底活動으로 인한 汚染, 投棄(Dumping)에 의한 海洋汚染에 대해서는 보다 구속적인 법적 근거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전술한 同協約 제9장의 地域協力義務와 더불어 제12장에 의한 地域協力義務에 의해서도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을 保護하고 保存하기 위한 沿岸國들의 地域協力義務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

(4) 1992年 UN環境開發會議(UNCED)

1987년에 브룬트랜드(Brundtland) 보고서를 유엔이 채택한 후 유엔총회는 1988년과 1989년의 두차례의 決議(resolutions)에 의하여 UNCED를 1992년 6월 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캐나다의 사업가이자 유엔환경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Maurice Strong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90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1992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리우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으며 이후에 나이로비와 제네바, 그리고 뉴욕에서 4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¹³⁾

Stockholm 人間環境會議가 개최된지 정확히 20년 후인 1992년 6월 드디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리우地球頂上會談((Rio Earth Summit)이 열렸다. 정식명칭이 유엔人間環境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인 이 회의에서는 '리우宣言' '議題21' 및 '森林原則宣言'이 채택되었고 위 회의의 기간중 서명을 위해 개방된 유엔 氣候變化協約과 生物學의 多樣性協約에 각각 155개국과 157개국이 署名하게 되었다.

12) 1982년 UN海洋法協約 제9장 제123조(半閉鎖海에 連한 國家間 協力), 제12장 197조(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에 관한 地域的 協力) 參照.

13) 李龍錫, 國際法-理論과 實際-(서울 : 世昌出版社, 1995), p. 471.

리우선언은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록 法的 拘束力을 가지지는 않으나, 環境과 開發의 均衡, 즉 持續可能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정책에 입각한 21세기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國際環境法의 憲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環境保護는 開發過程의 重要한 일부분을 구성하며, 開發過程과 環境保護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共同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宣言은 持續可能한 開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權利와 義務 및 責任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環境權과 開發의 權利, 개발도상국의 特殊事情의 考慮, 선진국의 優先的 責任, 환경보호를 위한 豫防的 措置, 汚染者負擔의 原則, 國內的 履行措置의 義務, 越境環境被害防止의 義務, 國際協力の 義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地域國家間의 協助義務(duty to cooperation)가 이미 國際慣習法的인 근부범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豫防義務가 우리주변의 해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이에대한 義務違反을 국가의 國際責任으로까지 확대, 적용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議題21은 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行動指針을 담은 實踐綱領이며 전문과 4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구속력있는 협약은 아니나 海洋環境을 포함한 각 분야의 다양한 地球環境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이를 시행할 財政支援, 技術移轉 및 國際機構와 國際法規則에 관한 국제사회의 合意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개최될 개별협상의 指針이 될 것이다.¹⁴⁾

(5) 海洋環境保護에 관한 國際法의 새로운 動向
海洋汚染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국제법의 하나인 國際條約으로 체결된 것은 '1954년의 기름에 의한

海水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OILPOL, 1954)'이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이 조약은 1962년에 대상선박의 확대, 배출기준에 관한 규제의 강화 등에 관하여 개정을 보았고, 1969년에는 기름의 배출에 관한 총량규제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1971년에는 사고시에 탱커로부터의 기름유출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는 탱크크기(tank size)의 제한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環境保護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1972년 6월 Stockholm에서 유엔人間環境會議를 개최하여 '人間環境宣言'을 채택하였고, 또한 유엔環境計劃(UNEP)이 설치되었다. 이에대한 성과의 하나로서 1972년 11월 '海洋投棄制協約(The London Dumping Convention)'¹⁵⁾이 런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선박을 비롯하여 항공기나 해양구조물로부터의 유해물질의 해양에의 투기를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54년의 기름에 의한 海水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에 대한 1971년의 개정후 국제적 여론에 따라 선박의 구조, 설비에 관한 의무규정을 대폭 추가하는 한편 기름의 '배출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고 기름 이외의 유해액체물질 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발본적 개정내용을 포함하는 '1973년 海洋汚染防止協約'을 런던에서 채택하였다.

그 후 1967년 Torrey Canyon호 사고가 계기가 되어 1969년 '기름에 의한 汚染事故가 발생한 경우의 公海上의 介入에 관한 國際協約'¹⁶⁾은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海難의 결과 沿岸國의 이익이 기름오염에 의하여 침해될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연안국은 그 위험을 防止, 輕減 또는 除去하기 위하여 당해 선박의 기국과 事前協議할 것을 전제로 하여 公해상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3년協約이 채택에 따라 기름 이외의 유해물질에 까지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기름이외의 物質에 의한 海洋汚染事故가 발생한 경우의 公海上의 介入에 관한 議定書(公法議定書)'가

14) 金文達·金泰川, 國際法(서울: 法文社, 1994), pp. 498-499.

15)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t Sea, 1972이다.

16)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로서 일명 公法協約이라고도 한다.

채택되었다.

또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에 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구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1969년에 '기름에 의한 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는 유류손해의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박소유자의 추가적 부담을 구제할 것을 목적으로 '油類損害報償을 위한 國際基金의 設立에 관한 國際協約(FUND, 1971; 일명 基金協約이라 함)'이 채택되었다.

1976년 말에서 1977년 초사이에 유조선의 해난 사고가 미국연안에서 발생하자 미국정부는 IMCO에 대하여 유조선의 안전과 海洋汚染防止規制의 개선강화를 제안하여 1978년에 '1973년 海洋汚染防止協約 및 1974년 海上人命安全協約에 관한 1978년 議定書'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은 1971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第3次 유엔海洋法會議를 개최하여 바다의 憲章이라 불리우는 유엔海洋法協約을 채택하여 1994년 발효시켰고, 1992년 브라질의 리로데자네이로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地球村頂上會談을 개최하여 해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결의를 함으로써 국제법적인 규범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海洋汚染의 규제에 관한 각종 협약을 통하여 海洋汚染에 관한 국제법이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協約들은 海洋汚染問題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미흡했고, 특히 국가의 管轄權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국제적 규제가 회피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즉 선박 오염사고에 있어서 國家管轄水域밖에서의 오염의 규제나 처벌의 권한은 선박의 旗國에만 인정하는 소위 旗國主義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결국 전통적인 海洋法은 근본적으로는 公海自由의 原則을 유지하면서 海洋汚染防止를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대형화되고 심각화되는 海洋汚染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국주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연안국에게도 규제를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沿岸國管轄의 擴大' 또는 '寄港地國管轄의 擴大'로의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¹⁷⁾

III.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立法現況

1. 概 觀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각 沿岸國의 國內法은 주로 이 분야의 國際法을 國內法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國內의 모든 정책은 이미 국제적인 海洋汚染防止政策의 일부로 볼 수 있고, 國際法の 구조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國際海洋汚染防止를 위해서 결국 각국의 모든 立法政策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國際的 協力은 각국의 기본적인 國內環境政策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東北亞海域 沿岸國의 기본적 環境政策에 대한 概觀은 이 지역에서의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法の 발전을 조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關聯周邊沿岸國들이 海洋汚染防止를 위해 취하고 있는 制度的 措置는 東北亞海域의 環境保護를 위한 최소한의 共通性を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韓 國

韓國은 국가의 적극적인 經濟開發政策에 의해 1970년대를 전후하여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都市化로 인해 公害 등 環境問題도 量的, 質的으로 擴大, 高度化, 複雜化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環境問題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77년 이전의 環境問題에 대한 法的制度는 1961년 汚物清掃法, 1963년 公害防止法에 의하여

17) 崔載勳,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旗國主義의 修正", 大韓國際法學會論叢 第23卷 第1號1978, pp. 290-293.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汚物清掃法은 一般廢棄物¹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公害防止法도 법시행을 위한 施行規則이 1967년에 가서야 제정되는 등 총체적이고도 실효적인 環境問題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지적되었다.¹⁹⁾

한편 1977년 故 朴正熙 大統領이 행한 연두기자 회견에서 環境問題를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立法, 行政의 次元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제8차 憲法改正 당시 처음으로 憲法 제35조에 環境權을 신설하였고, 또한 1980년에는 環境行政을 전담할 環境廳을 신설함으로써 行政의 次元에서의 環境問題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날로 多樣化, 複雜化해가는 環境問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1980년에 신설된 環境廳은 1990년 環境處로 확대·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環境保全法도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90년 環境廳의 環境處로의 擴大·改編과 같은 해 8월의 環境政策基本法の 제정은 분명히 韓國 環境政策 및 環境立法政策의 일대 전환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의 環境保全法은 大氣, 水質, 騒音, 振動 등 이질적인 環境分野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多樣化, 複雜化해가는 현대의 環境問題를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環境處의 昇格 및 環境政策基本法の 제정은 環境政策을 위한 立法, 行政上의 체계를 한층 더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環境政策의 實效的인 執行을 위해 요구되는 制度的 未備點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環境問題가 주요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법정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 1994년 12월 3일 政府組織大改編作業에서 環境處를 環境部로 昇格시켰다.²⁰⁾ 이와같은 혁신적인 部昇格은 環境問題에 대한 국민의식과 국내외 여건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環境部는 과거와는 달리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環境部는 部昇格을 계기로 에너지 管理, 國立公園管理 및 山林行政 등 自然保護, 水資源管理, 각종 廢棄物 處理問題 등의 環境問題를 핵심적인 고유업무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貿易-環境의 連繫方式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 대처문제 등은 세계화시대의 環境部에 범국가차원에서의 대응력을 요구하는 중요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海洋環境에 대한 韓國의 관심은 1970년대 초, 東之那海의 石油鑛口開發權에 관한 韓國, 臺灣, 日本의 協商과 관련하여 공식화되었다. 韓國은 日本과의 海洋資源開發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海洋汚染과 관련된 韓國의 법률적 견해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海洋汚染과 관련된 法律이 1970년에 제정된 「海底鑛物資源開發法」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977년 海洋汚染防止法이 제정되었다.

3. 中國

中國은 현재 MARPOL 73/78 附屬書 I, II, III와 1969년 CLC(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및 1969년의 CLC Protocol, 그리고 1972년의 LDC(London Dumping Convention) 및 그 改正協約인 1978년의 「Incineration」에 관한 改正協定과 1980년의 「汚染物質目錄」(List of Polluting Substances)에 관한

18) 汚物清掃法上의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 재, 분뇨, 폐수, 동물의 사체, 기타 사람의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廢棄物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참조).

19) 公害防止法은 1978년 環境保全法の 제정에 의해, 汚物清掃法은 1986년 廢棄物管理法의 제정에 의해 각각 廢止되었다.

20) 朝鮮日報 1994. 12. 4일자 1~7면 參照. 環境部の 모태는 保社部 公害課로 1980년 1월 保社部 외청인 環境廳으로 모양새를 갖추던 1990년에는 環境廳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다시 4년만에 部로 승격되면서 외청으로 출발한지 14년만에 정식 部로 격상된 것이다.

改正協定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1982년에 제정된 中國의 海洋環境保存法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MEPL') 은 그 후속 立法措置로 沿岸의 석유 및 가스개발 그리고 船舶으로부터의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MEPL은 國家海洋廳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 SOA)으로 하여금 海洋環境의 調査, 監視, 探知 및 科學的 研究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海洋汚染關係를 SOA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효율적인 海洋汚染防止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海洋汚染防止政策에 국가 경제정책의 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海洋汚染防止와 海洋利用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海洋汚染防止를 위해 그 후속조치로서 「船舶으로부터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規程」 및 「油田開發로부터 海洋環境保存에 관한 規程」을 제정하는 등 대체적으로 韓國보다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日本

日本은 1967년에 公害對策基本法을 제정하여 環境分野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일본의 環境政策 및 立法은 오염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즉 大氣汚染의 경우에는 요카치와 여타 공업지대에서 천식증상을 야기한 아황산가스만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水質汚染分野에서는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公害病 誘發物質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環境政策은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산발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공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하는 對證療法的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일본에서의 環境規制基準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분야에서는 매우 엄격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인 汚染規制計劃

에 따라 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²¹⁾

그러나 公害對策基本法에 따라 1970년 입시국회에서 14개의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 본격적인 環境保存努力을 개시하게 되었다. 또한 公害對策基本法에서는 汚染規制措置는 경제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公害法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일본의 環境法은 公害의 防止와 公害被害에 대한 救濟를 내용으로 하는 公害防止體系에서 인간생활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環境保全體系로 발전해가고 있다.²²⁾ 이처럼 일본의 環境法은 公害對策基本法을 중심으로 크게 公害規制法, 公害防止事業法, 公害救濟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海洋汚染防止와 관련하여 일본은 1967년 8월 21일에 1954년 油類에 의한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에 가입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름에 의한 해수의 汚濁防止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150톤이상의 유조선 및 500톤 이상의 일반선박으로부터 協約에 규정된 금지구역에서 油類나 油濁混合物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油類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구비, 유류기록부의 비치와 검색 및 폐유처리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7년의 법률은 1970년에 海洋汚染防止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한편 海洋汚染防止法은 1954년 協約의 1969년 改正案에 규정된 배출기준 및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9년 公害介入權協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海洋汚染防止法은 1976년 개정에 의하여 海難事故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여 海洋汚染 및 海上災害의 방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률은 선박,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과 소각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폐유의 적정한 처리 및 배출된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과 廢棄物의 防除와 海上災難에 따른 선박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21) 朴贊鎬, “船舶汚染에 관한 國際法の 發展”,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pp. 187-188.

22) 金元主, “日本の 環境法體系”, 環境法研究 第10卷, 1989, p. 80.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1조).

한편 日本은 1978년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議定書의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항구 또는 연안에 碇泊한 외국선박에 설치된 海洋汚染防止施設 등이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海洋汚染과 관련한 국내법령은 災難豫防 및 防除措置에 관한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있다.

5. 北 韓

環境保護를 위한 北韓의 立法的 發展過程에 관하여는 특별하게 기록할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1972년에 제정된 北韓의 憲法에서도 環境問題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1974년 개정된 新刑法 제102조는 公害를 발생시켜 인민의 건강 및 재산에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懲役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74년의 토지법도 “강, 하천과 호소(湖沼),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 보내거나 汚物을 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北韓도 環境保護法을 立法·制定하여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6년 4월 9일 最高人民會議에서 채택된 環境保護法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環境汚染問題가 대두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環境汚染問題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에 앞서 環境保護對策을 세울 것, 汚染物質의 배출기준을 준수할 것, 국토개발계획 수행시 環境保護를 고려하여 집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특히 정부원에 環境保護委員會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단일한 立法은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環境保護法이 大氣, 水質, 土壤, 生物 그리고 海洋汚染을 綜合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체계가 단순한 실정이다.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北韓의 立法的 態度는 韓國, 中國, 日本과 비교해 볼 때 그 발전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北韓도 MARPOL 附屬書 I, II, III, IV, V에 가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環境保護法을 제정하는 등 海洋汚染防止에 대한 기본적인 法的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6. 評 價

지금까지 東北亞海域의 주요 沿岸國들의 국내법을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 海洋汚染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을 역력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982년에 성립된 유엔海洋法協約이 지난 1994년 12월에 발효함으로써 이제는 각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環境損害防止義務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이고 環境損害防止를 위한 實施 및 方法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한 내용까지도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義務는 각종 國際協約이나 國際判例 및 각종 國際機構의 宣言, 決意 등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國際法上 확립된 義務라 할 수 있다.

IV.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家의 義務와 責任

1. 國家의 環境損害防止義務

(1) 傳統的 意味의 義務

環境汚染에 대한 傳統的 國際責任論에 의하면, 자국영역내에서의 경제활동, 자원개발 등 主權的 權利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활동이 타국의 領土 保全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領域使用의 管理責任’의 개념을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國際責任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서의 環境汚染에 대한 國家의 義務는 국가간의 ‘相互的 義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汚染防止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즉 結果的 義務만을 부담하며 實施措置의 方法과 手段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여기서의 국가의 의무는 一般的 내지 抽象的인 義務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제적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국 혹은 그 국민의 영역, 재산,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타국의 領域主權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제법상 자국영역내의 활동에 의하여 타국에 環境損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一般의 義務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環境損害防止義務'라 부르며, 이 義務는 1990년대 초부터 條約, 國際慣習法, 國際判例 혹은 國際立法과 國家實行 등에서 國際環境法上 실질적인 規則으로 인정되어 왔다.

(2) 現代的 意味의 義務

위에서 검토한 傳統的 義務의 環境損害防止義務는 오염의 다양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現代的인 環境損害에 대해 적용하는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環境汚染에 대한 國際責任에 있어서 國家義務의 성질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廣域大氣汚染이나 海洋汚染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相互的 義務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혹은 국가의 普遍的인 義務를 인정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²³⁾ 그리고 대규모의 廣域的 環境汚染은 이미 국가 상호간의 의무의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에 부여된 義務의 성질도 實施, 方法의 義務 등의 각국의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²⁴⁾

이러한 實施, 方法의 義務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關국가들간의 協力이 필요하다. 즉 국가를 초월한 자연자원의 이용이나 초국가적 環境損害의 防止 혹은 輕減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相關국가들간의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相關국가들간의 협력은 越境環境損害로 인한 국가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과정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각국이 타국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善隣(good faith)의 原則에 입각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善隣의 原則에 입각한 일반적인 協力の 義務는 수많은 國際條約과 國際機構의 決議를 통하여 중요한 국제법규범으로 인정되어 왔다. 1972년 스톡홀름宣言原則 제24는 "環境의 保護와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협조적 정신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多者間 및 兩者間 協定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협력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모든 분야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規制, 豫防, 減輕 및 除去하기 위하여는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國家의 協力義務를 인정하였다. 또한 國際判例에서도 이러한 국가간의 協力義務가 인정된 바 있다. 즉 Lake Lanoux事件에서 仲裁法院은 國際水路의 이용에 있어서 國家間的 協力義務를 인정하였다.

이와같이 現代的 意味의 環境損害防止義務는 環境損害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국가간의 協力義務의 형태를 가진 채, 一般國際法上的 法原則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協力の 義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먼저 구체화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의무가 국제법상의 의무로 되어 위반시에 國際責任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國際環境汚染에 대한 국가의 國際責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注意義務를 위반하여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相關국가간의 상호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環境損害防止義務라 하고, 이를 다시 크게 事前的 豫防의 義務와 事後的 救濟의 義務로 대별하기로 한다. 事前的 豫防의 義務로는 環境影響評價의 義務, 通告의 義務, 協議의 義務, 事前承認의 義務 등을 들 수 있고, 事後的 救濟의 義務로는 援助의 義務, 基金造成的 義務 등을 들 수 있다.²⁵⁾

23) 1979년 長距離大氣越境汚染에 관한 條約 제2조 및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 제192조, 194조 參照.

24) 金文達·金泰川, 前掲書, pp. 493-495.

25) Allen L. 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Westport/London : quorum books, 1983), pp. 144-145.

2. 環境保護義務에 대한 主要 內容

(1) 環境影響評價의 義務

國家는 環境에 逆효과를 미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를 먼저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이미 國際法上的 義務로 승인되고 있다. 이러한 環境影響評價의 義務는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이 다른 국가의 環境에 실질적인 간섭을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거나 허용하기 이전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의무는 당해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計劃樹立과 실행의 효과가 관련된 다른 국가에게 사전에 通告하거나 사전에 情報를 提供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요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環境影響評價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環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將來의 環境保存策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⁶⁾

(2) 通告의 義務

環境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계획의 실시 혹은 제반활동을 함에 있어서 당해국가는 그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웃 국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사전에 통고할 通告의 義務, 혹은 현실적인 環境損害를 야기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게 경고하여야 할 警告의 義務와 같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通告의 義務 혹은 警告의 義務는 바로 情報交換(exchange of information)을 내용으로 한다. 즉 이러한 의무는 다른 관련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관련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

능한 정보를 그 요청국에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발생된 특정한 越境環境損害의 性質 및 程度,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被害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를 통하여 국가는 협력이나 다른 분쟁 해결의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環境損害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情報提供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천연자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通知의 義務 또는 情報提供의 義務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제하천과 같은 초국경적인 천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이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의무는 그 위험이 國家管轄權 밖에서 구체화되고 전혀 汚染被害國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²⁷⁾ 예를 들면, 유엔 海洋法協約 제189조에서는 “一國이 海洋環境이 汚染될 절박한 위험에 처해있거나 汚染되고 있는 경우를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손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타국 및 권한있는 國際機構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協議의 義務

오늘날의 國際環境法은 環境損害를 야기한 국가에 대하여 잠재적 피해국과의 協議(consultations)를 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國際法上 協議의 義務라고 부른다. 여기서 協議라 함은 ‘越境的 環境危險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국들의 이해관계의 고려가 그러한 계획의 최종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 피해국들과의 의견의 교환에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피해국은 가해국과의 이러한 協議를 통하여 가해국의 제한된 혹은 기존의 環境危險活動의 내용을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피해국의 天然資源이나 環境에 대한 잠

26) 李淳福, 國際海洋環境法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4, pp. 93-94.

27) J.G.Lammers,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carried out by the english-speaking section of the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in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5 Transfrontier pollution and international law, 1986, pp. 106-107.

재적 역효과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²⁸⁾

(4) 援助의 義務

앞에서 기술한 세가지 의무는 事前豫防의 義務인데 반하여 援助의 義務는 事後救濟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國際環境汚染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국가도 環境의 原狀回復이나 被害救濟를 위한 활동에 조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1992년 리우宣言 原則 제18에서는 “다른 나라의 환경에 급속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自然災害나 기타의 緊急事態는 이들 나라에게 즉각적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가를 원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環境汚染으로 인한 위험을 야기한 원천이나 그로인하여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環境汚染의 위험에 대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여러 國際條約들이 있다.²⁹⁾ 예컨대, 1971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沿岸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相互援助體系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고, 1986년 IAEA총회는 핵사고의 방지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核事故 또는 放射能에 의한 緊急事態時의 援助에 관한 協約’을 채택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협약은 관련국가들에게 援助要請의 權利와 義務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1994년 12월에 발효한 UN海洋法協約은 제199조에서 “海洋汚染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내의 국가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권한있는 國際機構와 가능한한 汚染의 효과를 제거하고 損害를 防止 또는 極少化하는데 協力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家責任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環境損害防止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간 協力義務는 이미 國際慣習法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相當한 主義(due diligence)義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國際責任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Trail Smelter事件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적어도 국경을 인접하는 2국간에 있어서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중대한 環境損害에 대해서는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미 國際慣習法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環境損害防止 義務違反은 國際責任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후 Corfu channel 事件 및 Lake lanoux事件 등의 判決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각종 國際條約이나 地域條約 및 國際機構의 宣言, 勸告, 指針 등에서서도 문언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³⁰⁾

國際環境法이 國家責任原則의 적용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오늘날 國際社會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도로 발전된 産業社會의 형성으로 國際環境公害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울러 심각하고도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陸上起因 海洋汚染과 같이 국가의 主權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지역에서의 汚染行爲에 대해서는 汚染防止에 관한 國際協定에 의해서도 실효적인 法執行이 용이하지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동북아해역과 같이 公海帶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³¹⁾ 국가의 領域內에서 발생한 汚染이 타국에 대해 직접적인 汚染被害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國家는 海洋汚染防止의

28) Francesco Francioni,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ocedural Dimens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London/Dordrecht/Boston :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1993), pp. 209-210.

29) Allen L. Springer, Ibid., p. 144.

30) 金文達, "海洋法協約과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存", 法學論叢, 慶北大學校 法學研究所, 1986, p. 21.

31) 黃海의 최대폭이 약 380해리이므로 黃海沿岸國들이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을 설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公海帶域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義務를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그 義務의 違反은 곧 國家責任³²⁾을 구성한다는 논리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國際環境汚染에 관한 慣習國際法은 이미 Trail Smelter原則, 領域主權制限의 原則, 公海自由의 合理的制限原則 등이 傳統國際法의 內容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한 海洋汚染防止義務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國家責任原則의 적용 이외에는 달리 적용될만한 적절한 國際法의 原則은 없다.

근본적으로 國家의 國際法上 國家責任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國際義務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가 있을 것, 그러한 不法行爲로 인해 損害가 발생할 것,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損害發生의 責任이 그 국가에 귀속되는 事由가 있을 것 등이다.³³⁾ 그러나 비록 國際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의 法益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人的, 物的 損害를 주게되면 그에 대한 責任을 저야할 경우가 있다. 즉 國家의 適法行爲에 의해서도 國家責任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海洋汚染行爲에 따른 國家責任은 바로 이러한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나 國家의 海洋汚染防止義務는 1982년 UN海洋法協約 제 192조, 제194조 및 199조에 따라 國際法上 인정된 國家의 義務이다. 그런데 자국 영토내에서의 汚染行爲에 대해서는 國家主權原則이라는 전통적인 國際法原則에 의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地球環境의 生態界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밝혀지면 오히려 國家主權原則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의 특별한 契約的 義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東北亞海域은 公海가 거의 없고 海水의 혼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沿岸國의 자국내에서 발생한 海洋汚染은 곧 타방 沿岸國의 海洋汚染으

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 따라서 海洋汚染의 國家責任에 대해 慣習國際法에 의존하는 외에 각 沿岸國의 자국내 海洋汚染防止義務에 대해 국가간의 특별한 契約的 義務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海域沿岸國家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질성때문에 보다 특수한 地域的 協力を 위한 協約의 채택 및 汚染防止를 위한 諸般義務를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機關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國家責任制度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V. 東北亞海域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地域的 協力

1.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際的 協力

통상적으로 汚染에는 國境이 없고 또한 海洋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海洋環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全地球的인 次元에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와같이 海洋環境의 보호문제는 凡世界的인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地域性을 가지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地域性이란 첫째로 海洋環境이 生態學的인 관점에서 보아 보통 地域的인 特性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그러한 地域性을 가지는 自然環境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매우 地域的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地域的 要素가 복합될 경우 地域的 協定을 체결하여 海洋環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같은 環境破壞의 지역성을 감안한 조치로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地理的 近接성과 關係諸國의 유사한 政治制度나 經濟水準, 生活樣式 등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화된 체제를 취할 수 있고, 凡世界的인 多者條約에 의하여 국가간의 발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國際的인 規制와 基準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實效性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³⁴⁾

32) 國家責任 또는 國際責任이란 國際法主體인 國家가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國際法上的 責任을 말한다. 國家의 國際責任에 관해서는 金文達·金泰川, 國際法(서울: 法文社, 1994), p. 299 參照.

33) 李丙朝·李仲範, 國際法(서울: 一潮閣, 1987), p. 214.

34) 盧明濬, “國際法上的 環境汚染問題”, 서울大學校「法學」, 第22卷 第2號, 1981.6, p. 93.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存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곧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1972년 스톡홀름宣言을 계기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이를 위한 國際社會의 努力은 1982년 UN海洋法協約의 성립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위한 1982년 UN海洋法協約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規則 및 基準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規則 및 基準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國際協定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海洋汚染防止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1982년 UN海洋法協約은 곳곳에서 地域的 協力을 강조하고 있다.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定과 마찬가지로 汚染源別 國際協定도 그것이 법논리적인 귀결에 따라 성립된 것이 아니라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효율성의 이유때문이고, 특히 海洋汚染의 發生原因에 따라 國際法の 適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海洋汚染의 防止를 위한 國際協定은 汚染防止의 효율성 또는 國際法 適用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성립되며, 이는 결국 地域的 協定이나 汚染源別 協定の 형태를 띠게 된다.

1982년 UN海洋法協約도 종래 관습적으로 막연히 구별되어 오던 汚染源을 船舶起因 海洋汚染, 陸

上起因 海洋汚染, 大氣로부터 또는 大氣를 통한 海洋汚染, 海底活動으로 인한 海洋汚染, 海洋投棄 등 다섯가지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海洋汚染의 실태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제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世界的 次元에서의 海洋汚染防止問題는 일반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海洋汚染防止問題는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地域的 協力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海洋汚染에 대한 이러한 점은 汚染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國際的 努力이 地域單位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게 한 인식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현재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定은 세계적으로 약 20개가 채택되어 있다.

한편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定은 대체로 多者間 協定(general multilateral treaties), 地域的 協定(regional treaties)³⁵⁾, 그리고 1982년 UN海洋法協約(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1982)에 의한 海洋汚染防止協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OILPOL과 MARPOL 등은 多者間 協定の 대표적인 예이며, 주요 地域的 協定으로는 「Bonn 協約」³⁶⁾, 「Oslo 協約」³⁷⁾, 「Paris 協約」³⁸⁾, 「Helsinki 協約」³⁹⁾, 「Barcelona 條約」⁴⁰⁾, 「Kuwait 條約」⁴¹⁾ 등을

35)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定은 일반적으로 沿岸國들에 의한 자발적인 地域協定과 UNEP의 후원하에 성립된 地域協定으로 구별할 수 있다. 최근에 UNEP는 동아시아해를 地域協力計劃推進海域으로 설정하고 이 海域을 7개의 小地域海로 세분하여 관리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 勸告는 1976년 '동아시아해의 海洋汚染에 관한 Workshop'에서 발표되었으며, 7개의 小地域海는 뱅골만, 말라카해협, 타이만, 남지나해, 동해, 황해 및 동지나해 및 동군도수역 등이다.

36) 1969년 6월 9일 체결된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dealing with Pollution of the North Sea by Oil이다. 이 協約의 당사국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아일랜드이다.

37)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from Ships and Aircraft-1972이다. 이 協約의 가맹국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3개국이다.

38)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74이다. 이 協約은 陸上起因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約이다.

39)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Helsinki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Baltic Sea Area, 1974이다.

40)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1976이다. 이 條約은 주로 海洋投棄起因, 船舶起因, 海底開發起因, 陸上起因 등의 4가지를 다루고 있다.

41) 이 協約의 정식명칭은 Kuwait Regional Convention for Coop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ollution, 1978이다. 이 協約의 당사국은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등이다.

들 수 있다.

2. 地域的 協力の 當爲性 및 提言

주지하는 바와같이 環境保全을 위한 國際的 協力の 불가피성은 地域的 協力の 필요성을 더욱 절실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地域的 協력을 도외시한 國際的 協力は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경제발전의 경우에는 비슷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만, 특히 環境保全에 관한 문제는 한 나라만의 環境保全水準의 향상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環境保全을 위한 地域的 協力は 불가피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⁴²⁾

한편 海洋汚染의 문제를 일국의 國內的 措置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國家領域內 또는 領域外의 일정지역에서 汚染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海洋汚染의 성질상 그것이 확산되어 자연적으로 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海洋汚染을 방지하여 海洋環境을 保護 및 保存하기 위해서는 一國의 國內法的 措置만으로는 불충분하며 國際法上的 措置가 필요하다. 이러한 海洋汚染은 地域的 特性, 汚染源別 特性 등을 고려해 볼 때 凡世界的으로 규제하는 것도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凡世界的 規制가 모든 형태의 汚染有形에 대해 실효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閉鎖海와 半閉鎖海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海洋汚染을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海洋의 地域的 特性 및 相關 國家群의 政治·經濟的 特性, 汚染源別 特性 등을 고려한 地域的 協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1982년 UN海洋法協約도 이러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상당히 두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의 特殊海域에서 이를 위한 地域的 協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地理的으로 海洋汚染에 취약한 半閉鎖海로 이루어진 東北亞海峽역시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海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中國과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京畿, 忠南 및 全北의 海岸地域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黃海의 海洋生態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中國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中國大陸으로부터의 陸上起因汚染物質이 黃海 및 東支那海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 해역의 海洋環境汚染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역은 水深이 얇고 潮流가 강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 海洋汚染이 발생하면 이 해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해역은 公海帶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沿岸國의 管轄權下에서 발생한 汚染이라 할지라도 그 汚染被害는 他沿岸國의 管轄權下에 있는 海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해역의 海洋汚染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당해 沿岸國間의 地域的 協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地域的 協력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의 汚染狀態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並行하여야 할 것이다.⁴³⁾

결국 해양은 地域性과 규제의 實效性에 비추어 보아, 또 一般的인 條約의 작성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地域的 條約을 작성하여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海洋汚染防止에 관하여 너무 地域性에 편중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일성없이 진행된다면 오염방지조치의 단편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균형은 어려운 일이지만 地域的 條約은 이미 설정된 一般的 條約의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권국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현단계의 국제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一般的 條約이 정하고 있는 環境汚染防

42) 李尙圭, “東北亞地域的 環境保全을 위한 協力方案 序說”, 環境法研究 第13卷, 韓國環境法學會, 1991, p. 14.

43) 金燦圭의 3인, “우리나라 西海岸의 水質惡化에 따른 制度的 對處方案에 관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論叢 通卷 第72號, 1992, pp. 98~99.

止義務를 강제할 수 있는 超國家的인 國際制度的 창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시는 地域的 協定에 의한 地域機構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오늘날의 環境問題는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環境問題에 실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主權국가에 테두리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넘어선 國家間 協力體制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대 海洋環境法의 과제는 이와같은 國家間의 協力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인 틀(framework)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環境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 등의 측면에서의 國際法規 範의 발전은 물론이고, 環境影響評價, 事前通報 및 情報交換, 事前協議, 事後援助 등과 같은 汚染豫防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발전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즉, 國際環境法은 장차 實體法的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節次法的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양바퀴가 동시에 회전할 때 특히 국제성을 띠고 있는 海洋環境汚 染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적 발전을 實效性있게 하 기 위해서는 관련국가간의 地域的 協力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더우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해역은 半閉鎖海이므로 地域的 協力方案은 시급 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 경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하여 성립한 발틱條約이나 地中海條約 등 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지역은 각 국가들 간의 정치 적, 경제적 차이가 심하여 이러한 地域 的 協力條約을 성립시키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 다. 그러나 확실히 오염되어가고 있는 해양을 두고 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바다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海洋 法協約이 발효한 상태이고, 따라서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節次法的인 측면에서의 國家의 義務는 國際 慣習法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條約法에서 이미 정

착된 國際法原則이 되었다. 따라서 環境保護義務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國際法違反에 따른 國際責 任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특히 環境汚染은 이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후의 가장 해악한 적이므로 지금까지 國際犯罪로 간주되어온 集團殺害 (genocide), 奴隸賣買, 癩藥去來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결국 국제사회에 의한 강제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東北亞海域에 있어서 環境保護를 위한 各種 義務의 履行은 地域的 協約을 통하여 창 설된 地域的 機構에 의해 監視(monitoring)되어야 더욱 實效性을 거두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 김문달·김태천, 국제법, 서울: 법문사, 1994.
 김문달, “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1986.
 김태천,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1)”, 경북 대학교 법학논고 제9집, 1993.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9.
 김영구, 현대 해양법론, 서울: 아세아사, 1988.
 구연창, 환경법론, 서울: 법문사, 1993.
 박찬호, “선박오염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고려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유병화, “해양공해의 국제규제”, 고려대학교 법학 논집 제21집, 1983.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1990.
 이병조, “UN국제법위원회 국제책임협약잠정초안 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문총 제38 권 제2호(통권 제74호), 1993.
 이석용, 국제법-이론과 실제-, 서울: 세창출판사, 1995.
 이순복, “국제해양환경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84.
 임동철·민성규, 해사법규요론, 부산: 한국해양대 학교 해사도서출판부, 1992.
 전창조, 지구환경의 위기, 부산: 세종출판사, 1992.
 한국법학교수회, 법과 환경, 서울: 삼영사, 1977.

- 정경모·최달근(편), 북한법령집, 서울: 삼영사, 1990.
- 김찬규·이영준·권문상·김동술, “우리나라 서해안의 수질악화에 따른 제도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논문총 제37권 제2호(통권 제72호), 1992. 12.
- 권상하, “해양오염방지관계법제의 비교연구”, 해운산업연구원, 1989.
- 노명준, “국제법상의 환경오염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22권 제2호, 1981.
- 이상돈, “국제공해에 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법학논문집 제8집, 중앙대학교, 1983.
- 이상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국제적 및 지역적 규제”, 환경보존협회지 제5권 제1, 2호, 1984.
- 이영준,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구”-새로운 법질서의 형성 및 지역적 협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2.
- 홍기훈·박병권, “지구환경에 대한 해양학적 접근”, 해양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해양연구소, 1990.
- 소련법연구(IV)-대외관계법-, 법무자료 제145집, 법무부, 1991.
- (2) 外國文獻
- 野村好弘·作本直行(編), 發展途上國の環境法, 東京: アジア經濟出版會, 1993.
- 加藤一郎, 公害法の國際的展開, 東京: 精興社, 1982.
- 人間環境問題研究會, “海洋汚染の現代的諸問題” 環境法研究 7號, 東京: 有斐閣, 1977.
- _____, “環境問題의 國際的動向”, 環境法研究 3號, 東京: 有斐閣, 1975.
- 廉原敦子, “地球環境保護における損害豫防の法理” 國際法外交雜誌 第93卷 第3·4合併號, 日本國際法學會, 東京, 1994.
- Alexandre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Graham & Trotman Limited, 1991.
- Churchill, R.R. and Lowe, H.V. *The Law of the Sea*, Oxford: Manchester Univ. Press, 1983.
- Johnston, D.M.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China Sea: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1980.
- J.G.Lammers,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Carried out by the Englishing Section of the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in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5 Transfrontier Pollution and International Law, 1986.
- McDougal, M.S. and Reisman, W.D. *International Law in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81.
-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London: Clarendon Press, 1984.
- Springer, A.L. *The International Law of Pollution: Prot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in a World of Sovereignty Stat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3.
- Smith, B.D.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 Rule of Decis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Valencia, M.J.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Yellow Sea-Transnational Ocean Resource Management Issues and Options for Cooperation*, Occasional Paper No.3, Honolulu: East-west Environment and Policy Institute, 1987.
- Alexander, L.M. “Regional Arrangements in the Oceans”, 71 *A.J.I.L.*, 1977.
- Oczek, B.A.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Baltic Sea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A Study in Marine Regionalism*”, 72 *A.J.I.L.*, 1987.
- Patricia W. Birnie.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Silk, M.A. “China’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Review of Socialist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W. Lang · H. Neulold · K.Zemanek,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Series, London/Dordrecht/Boston :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1993.

Xu Yulin, "Chinese Environmental Law" : Its

past future,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Maintaining Peace and Promoting
Development*, Beijing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World, April 22-27, 1990.

UNEP. "Regional Seas Programme : Legislative
Authority", No. 17, 1985.